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9. 10. 14.> (앞 쪽)

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

처리기간
60 일

복합환승센터의 명칭								
지정대상 지역	지정 목적 및 필요성							
	위 치							
	면 적							
	토지이용 현황(㎡)	지목별						
		면 적						

개 발 기 간	~	개 발 방 법	
유 치 업 종			
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45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 (서명 또는 인)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
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(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만 해당합니다) 2. 위치도,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3.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지정대상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5. 용수(用水), 에너지, 교통, 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6. 개발한 토지·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(처분계획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·시설 등의 위치·면적 및 가격 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, 공급의 시기·방법 및 조건,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7.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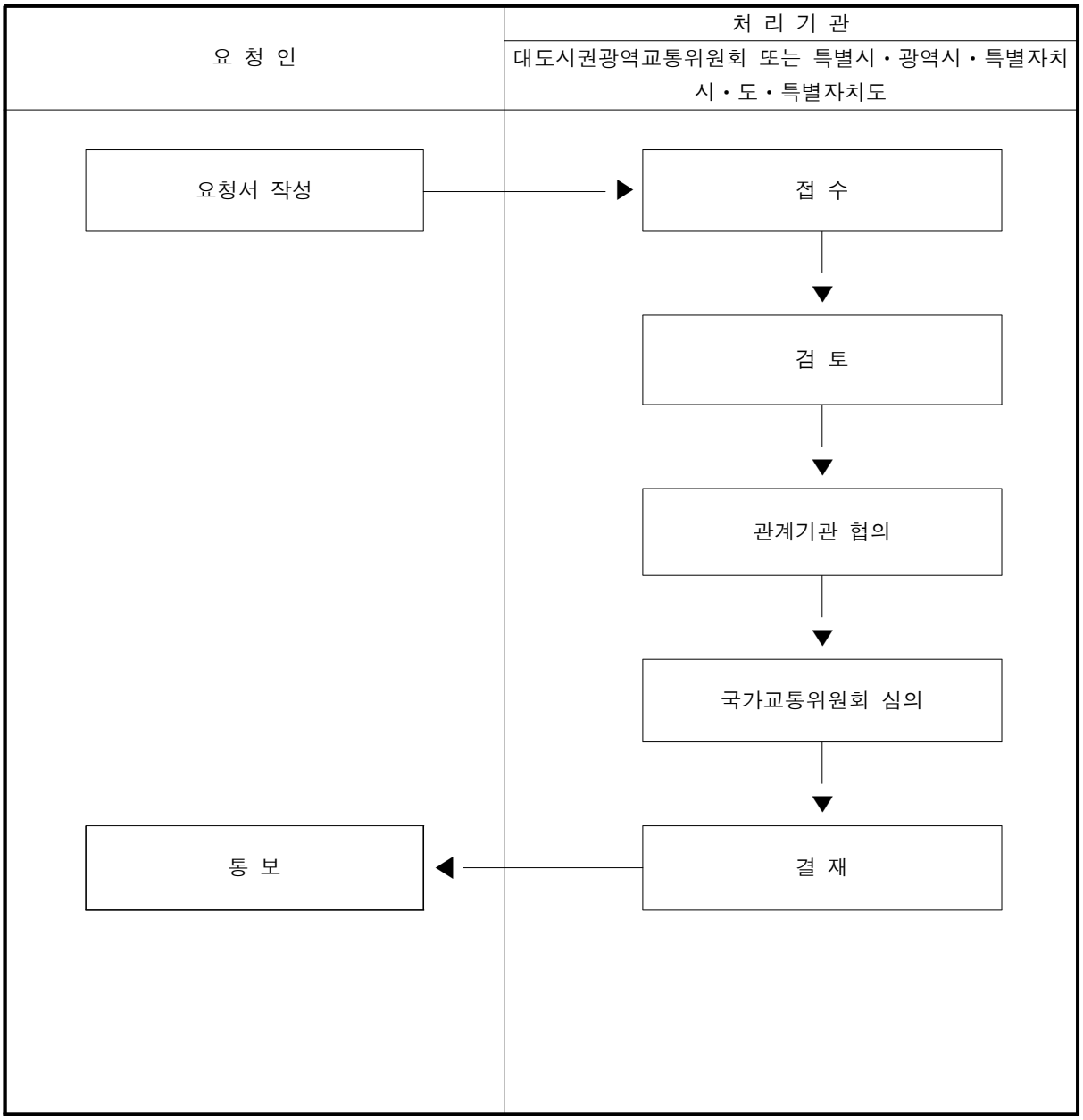
이 요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 (뒤 쪽)